

학회상 운영 규정

2007년 12월 26일 제5회 정기총회 제정

2010년 11월 24일 이사회 제 1차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(이하 본 학회) 규칙 제 26조에 따라 플랜트 관련 학술활동, 기술발전, 인력양성, 정책수립 또는 시장개척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포상(이하 학회상)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.

제 2 조 (상의 종류) ① 학회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한국플랜트 대상
 2. 플랜트산학협력 최우수기업
 3. 올해의 플랜트엔지니어
 4. 특별상
- ② 한국플랜트 대상은 하나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며,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플랜트산학협력 최우수기업은 하나의 기업체에 수여되며,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올해의 플랜트엔지니어는 약간 명의 개인에게 수여되며,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특별상은 본 학회와 유관한 단체 또는 개인이 기탁한 기금으로 시상되며,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상은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.
 2. 상의 존속기간은 상의 설치일자로부터 10년으로 하며, 그 이후의 존속여부는 기금 규모, 출연자(기관) 의사 및 학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 3. 2호에 의해 시상이 중단되는 기금은 전액 학회에 귀속된다.
 4. 상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수상후보자

제 3 조 (수상자격) 수상자 또는 수상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

한다.

1. 한국플랜트 대상: 플랜트 관련 학술활동, 기술개발, 산업발전, 인력양성, 정책수립 등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
2. 플랜트산학협력 최우수기업: 플랜트 관련 학술활동, 기술개발, 산업발전, 인력양성, 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모범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한 기업
3. 올해의 플랜트엔지니어: 당해 연도에 플랜트 관련 학술활동, 기술개발, 산업발전, 인력양성 또는 학회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엔지니어
4. 특별상: 각 특별상 운영세칙에 따름

제 4 조 (추천자격)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가 추천할 수 있다.

1. 학회 정회원 5인 이상 또는 임원
2. 주무부처의 장
3. 대학(교)의 학장 또는 총장
4. 관련 기관, 기업, 연구소, 학회, 협회 등 단체의 장

제 5 조 (추천시기) 수상후보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추천한다.

제 6 조 (구비서류)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제 4 조 추천주체의 추천서
2.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공적조서
3.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

제 3 장 학회상심사위원회

제 7 조 (위원회 구성) ①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회상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는 필요시 상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제 8 조 (후보 추가) 학회상심사위원회는 제 6 조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 이외에 별도의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, 심사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 유고 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0 조 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심사자료) 위원회는 업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장 수상자결정

제 12 조 (후보자 추천) 위원회는 상별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.

제 13 조 (수상자 확정)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이사회 의 인준을 거쳐 수상자로 확정한다.

제 5 장 시 상

제 14 조 (시상 시기) 학회상은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5 조 (상의 내용) 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.

부 칙

1. 수상자 선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2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회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3. 본 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2007년도 학회상 시상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따른다.
 - ① 학회 회장은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임시 학회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.
 - ② 본 규정의 발효와 함께 수상자를 결정하고 시상한다.
 - ③ 회장은 회원에게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다.

부 칙

1. 제 1차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2010년도 학회상 시상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따른다.
 - ① 회장은 규정 개정 이전에 제 7 조에 규정된 학회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.
 - ② 개정 규정의 발효와 함께 수상자를 확정한다.
 - ③ 회장은 이사회에서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다.